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. 11. 13 선고 2015가단6008 판결 [이득상환금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5. 10. 23.

판결 선고 2015. 11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. 10. 2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3. 일부 기각 부분

2015. 10. 1.부터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 이율을 연 15%로 변경하는 취지의 개정된
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.

판사이금진

별지